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2. 7. 12.(화)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114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전라북도 조례 제5115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정조례 8
- 전라북도 조례 제511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12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2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5114호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인·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인·단체에게 맡겨”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로, 제2호 중 “권한을”을 “사무를”로,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를”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위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2.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3.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안을 의회(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경우

제5조제3항 끝에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같은 조 4항 끝에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6조제1항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를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별로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필요시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영성과평가) 교육감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이 아닌 <u>법인·단체에게</u>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이 아닌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u>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u>법인·단체에게 맡겨</u>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u>권한을</u> 위탁받은 <u>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u>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u>사무를</u> 위탁받은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u>을 말한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② (생략)</p> <p>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방의회의 -----.</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p> <p>2.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p> <p>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p> <p>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p>

현행	개정안
	<p><u>을 받은 경우</u> 5.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안을 의회(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경우</p>
<p>④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② (생략)</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별로 위원회를 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현행	개정안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9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u>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9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u>필요시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p> <p>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p> <p>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p> <p>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p>

현행	개정안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u>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u>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u>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제14조(운영성과평가) 교육감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생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2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5115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교권보호위원회”를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4조제2항 중 “간사는 치유지원센터 센터장”을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한다”를 “변호사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

단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변호사법 등 법령”을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교권보호위원회</u></p> <p>제16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보호조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u>교권보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9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u>전라북도교육청</u>(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2. (생략)</p> <p>3. 학생생활지도 경력 <u>10년</u> 이상인 교원</p> <p>4. ~ 8. (생략)</p> <p>제2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u>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2. <u>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3. <u>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u></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u></p> <p>제16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 ----- <u>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u> ----- -----.</p> <p>제19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15년</u>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20조(위원의 임기) ----- ----- ----- <u>한 차례만 연임</u> ----- -----.</p> <p>제21조(위원의 해촉) ----- ----- -----.</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p>

<p><신 설></p> <p>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생략)</p> <p><신 설></p> <p>②·③ (생략)</p> <p>제24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u>치유지원센터 센터장이</u>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제28조(지원단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u>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한다.</u></p> <p>제29조(임기) ① (생략)</p> <p>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u>교육감이 법률고문을 위촉한 기간으로 한다.</u></p> <p>제32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3·4. (생략)</p>	<p>경우</p> <p>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u></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24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업무담당장학관</u>----- -----.</p> <p>제28조(지원단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변호사등 법률전문가 중</u> <u>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제29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단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2조(단원의 해촉)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령</u> ----- -----</p> <p>3·4. (현행과 같음)</p>
--	--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6. 2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2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511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진출된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